

#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규약(안)

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

## 수 도 권 행 정 협 의 회 규 약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사무소위치)** 협의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
**제3조(구성)** 협의회는 수도권행정관련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, 강원도, 충청북도로 구성한다.

**제4조(조직)** ①협의회의 위원은 제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.

②협의회의 회장은 서울특별시장으로 하고, 유고시에는 서울특별시 행정(1)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,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④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대리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.

**제5조(기능)**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결정한다.

1. 인접지역과 관련되는 도시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
3. 공공시설의 설치·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4. 인접지역과 관련되는 주택 및 공업단지 등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
5. 행정구역 경계관리 등에 관한 협의·조정 또는 공동처리에 관한 사항
6. 한강의 개발·관리 및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
7. 자원의 개발·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
8. 환경오염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
9. 시·도간 연결 버스노선의 신설·연장 등 교통망 확장에 관한 사항
10. 주요 연결도로 등 도로망의 신설·변경·확장 및 포장에 관한 사항
11.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
12. 수도권 광역 상·하수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
13.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공동감시·단속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
14. 자원 및 생산물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
15.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행정정보 및 기술의 교환
16. 기타 광역행정 수행상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 1호내지 12호 각호의 사항중 인접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계획확정 이전에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협의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
**제6조(회의)** ①회의는 상·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는 수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에 의하여 협의안건을 제출받은 회장은 협의안건을 실무협의회에서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전검토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④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.

⑤협의안건의 합의는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.

**제7조(미합의 사항의 조정요청)** 관계지방자치단체장은 협의회에서 2회이상 협의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협의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**제8조(합의 및 조정의 효력)** 관계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**제9조(간사 등)** ①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5인을 둔다.

②간사는 서울특별시의 광역행정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관 또는 담당 과장으로 하고, 서기는 각 시·도의 광역행정업무 담당사무관 각 1인으로 한다.

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자료제출 요구 등)** ①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각 위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, 협조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.

②협의회는 협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**제11조(자문위원)** ①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, 지방의회의원, 관련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.

③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·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2조(실무협의회)** ①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협의안전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.

②실무협의회는 위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업무담당실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,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련 국·과장이 배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③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 기획업무담당실장이 되며, 간사와 서기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자가 겸직한다.

④실무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실무협의회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
⑤위원장은 협의안전에 대한 검토의견을 종합하고 이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경비부담)**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.

**제14조(회계)** 협의회의 경리상황은 매년 첫 번째 회의시 간사가 보고하며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15조(규약변경)** 이 규약은 위원전원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.

**제16조(운영규정)**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규약의 해석 등 협의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

## 부 칙

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新·舊條文對比表

현행	개정안
<p>第1條(目的) 서울特別市를 中心으로한 首都圈關係 市·道單位 地方自治團體 間에 關聯된 行政事務의 一部를 共同으로 協議 處理하므로서 圈域內의 균형있는 發展과 廣域行政의 效率的인 推進을 圖謀하기 爲하여 首都圈行政 協議會(以下 “協議會”라 한다)를 設置 運營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 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행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第2條(事務所位置) (생략)</p>	<p>제2조(사무소위치) (현행과 같음)</p>
<p>第3條(構成) 協議會는 首都圈行政關聯 地方自治團體인 서울特別市, 仁川直轄市, 京畿道, 江原道, 忠淸北道로 構成한다.</p>	<p>제3조(구성) . . . . . . . . . . 인천광역시 . . . . .</p>
<p>第4條(組織) ①協議會는 會長 1人과 常任委員 및 非常任委員으로 構成한다. ②會長은 서울特別市長으로 하고 有故時에는 서울特別市 副市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. ③常任委員은 仁川直轄市長과 京畿道 知事로 非常任委員은 江原道知事와 忠淸北道知事로 하되 부득이한 事由 發生時 副市長 또는 副知事が 代理委員으로 參席할수 있으며 討議와 表決 權을 갖는다.</p>	<p>제4조(조직) ①협의회의 위원은 제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. ②협의회의 회장은 . . . . . . . . 서울특별시 행정(1)부시장 . . . . . . . . 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,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④會長은 協議會를 代表하며 會議를 召集하고 協議會의 事務를 總括한다</p> <p>第5條(機能) ①協議會는 다음 事項을 協議·決定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2. (생략)</li> <li>3. 公共施設의 設置 및 管理·運營에 關한 事項</li> <li>4. 隣接地域과 關聯되는 住宅團地 및 工業團地 等の 造成事業에 關한事項</li> <li>5. 行政區域 境界管理 等の 事務의 協議·調整 또는 共同處理에 關한 事項</li> <li>6. (생략)</li> <li>7. 資源의 開發·利用·調査에 關한 事項</li> <li>8. ~ 9. (생략)</li> <li>10. 主要 連結道路 等 道路網의 新設, 變更, 擴張, 鋪裝 等に 關한 事項</li> <li>11. ~ 12. (생략)</li> <li>13. 開發制限 區域內에서의 共同監視, 團束 其他 이와 關聯된 事項</li> <li>14. (생략)</li> </ol>	<p>④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대리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.</p> <p>제5조(기능) ①... 각호의 사항 ..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~2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3. .... 설치·관리 및 운영 ....</li> <li>4. .... 주택 ....</li> <li>5. .... 등에 관한 ....</li> <li>6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7. .... 이용 및 조사 ....</li> <li>8.~9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10. .... 확장 및 포장에 ....</li> <li>11.~12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13. .... 단속 및 기타 ....</li> <li>14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

현 형	개 정 안
<p>15.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資料, 情報, 技術의 交換</p> <p>16. 其他 廣域開發 및 廣域行政 遂行 上 必要한 事項</p> <p>②(생략)</p>	<p>15. . . . . 행정정보 및 . . . . .</p> <p>16. . . . . 광역행정 . . . . .</p> <p>②(현행과 같음.)</p>
<p><b>第6條 (協議方法) ①</b>委員은 協議案件을 會長에게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하며 會長은 實務協議會의 事前檢討를 받아 30日以內에 會議를 召集한다.</p> <p>②協議案件의 合意는 參席委員 全員의 贊成으로 한다.</p>	<p>(삭제) * 제6조로 이기</p>
<p><b>第7條 (會議) ①</b>協議會의 會議는 定期會議, 臨時會議로 區分한다.</p> <p>②定期會議는 年2回 하되 2~3月과 8~9月中에 會長이 召集한다.</p> <p>③臨時會議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召集하되 會長은 委員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한 會議를 召集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6조(회의) ①</b>회의는 상·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는 수시회의로 구분한다.</p> <p>②협의회에 안건을 삼점하고자 하는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제2항에 의하여 협의안건을 제출받은 회장은 협의안건을 실무협의회에서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전검토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</p>

현	행	개	정	안
<p>④會長은 會議가 있을 때마다 協議案件을 準備하여 關係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미리 配布하여야 한다.</p>	<p>④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.</p>	<p>⑤會長은 協議會 開催後 14日以內에 協議會 開催結果를 內務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.</p>	<p>⑤협의안건의 합의는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.</p>	
<p>第8條(事務處理) ①協議會의 事務를 處理하기 爲하여 幹事1人和 書記3人을 둔다.</p>	<p>〈삭제〉 *제9조로 이기</p>	<p>②幹事는 서울特別市の 企劃管理室 擔當官으로 하고 書記는 各常任委員이 指定하는 企劃管理室 所屬係長 1人으로 한다.</p>		
<p>第9條(會議錄 作成) 協議會의 幹事는 會議錄을 作成 管理하여야 한다.</p>	<p>〈삭제〉 *제9조로 이기</p>			
<p>第10條(資料提出要求等) 協議會는 事務 處理를 爲하여  필요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關係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資料의 提出, 意見의 開陳等 協助를 要求할 수 있으며 其他 必要한 경우에는 關係機關 公務員의 意見을 들을 수 있다.</p>	<p>〈삭제〉 *제10조로 이기</p>			

천	행	개	정	안
<p>第11條(未合意事項의 調整要請) 會長은 協議會에서 2回以上 協議해도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內務部長官에게 이에 對한 調整을 要請하여야 한다.</p>	<p>제7조(미합의 사항의 조정요청)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은 협의회에서 2회이상 협의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협의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</p>			
<p>第12條(協議 및 事務處理의 效力) 關係 地方自治團體는 協議會가 決定한 事項이나 內務部長官이 調整한 境遇에는 이에 따라 그 事務를 處理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(합의 및 조정의 효력)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</p>			
<p>(신설)</p>	<p>제9조(간사 등)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5인을 둔다. ②간사는 서울특별시의 광역행정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관 또는 담당과장으로 하고, 서기는 각 시·도의 광역행정업무 담당사무관 각 1인으로 한다. 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</p>			
<p>(신설)</p>	<p>제10조(자료제출 요구 등) ①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각 위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, 협조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. ②협의회는 협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p>			

원	개 정 안
<p>第13條(諮問委員) ①協議會는 協議事項에 關한 諮問에 應하게 하기 爲하여 諮問委員을 들 수 있다.</p> <p>②諮問委員은 國家의 特別行政機關의 長, 關聯公共團體의 長 및 關係 專門家中에서 協議會의 承認을 얻어 會長이 委囑한다.</p> <p>③公務員이 아닌 諮問委員에 對하여는 協議會가 定하는 바에 따라 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.</p>	<p>제11조(자문위원) ①.....                  .....<u>자문을 구하기</u>.....                  .....</p> <p>②.....<u>특별행정기관의 장, 지방의회의원</u>.....                  .....</p> <p>③.....                  .....<u>예산의 범위안에서</u>  <u>수당·여비 등 실비를</u>.....</p>
<p>第14條(實務協議會) ①協議會의 效率的 運營을 爲하여 上程案件에 對한 實務的인 事前檢討가 이루어지도록 實務協議會를 構成 運營한다.</p> <p>②實務協議會 構成은 地方自治團體의 企劃管理室長을 委員으로 構成하되 上程案件에 따라 關係局 課長이 陪席 參與하여 意見을 開陳할 수 있다.</p> <p>③實務協議會 委員長은 서울特別市の 企劃管理室長이 되며 幹事 및 書記는 第8條 第1項, 第2項을 準用한다.</p>	<p>제12조(실무협의회) ①협의회의  효율적  운영과  협의안건에  대한  사전검토를  爲하여  협의회에  실무협의회를  둔다.</p> <p>②실무협의회는  위원이  속하는  지방  자치단체의  기획업무담당실장을  위원으로  구성하며,  관계지방자치단체의  안전관련  국·과장이  배석하여  의견을  개진할 수 있다.</p> <p>③실무협의회  위원장은  서울특별시의  기획업무담당실장이  되며,  각사와  서기는  제9조제1항  및  제2항에  규정되어  있는  자가  겸직한다.</p>

